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 신뢰형성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채용 당시부터 사용지에 대해 채용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력을 은폐한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것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의무에 위배되며 따라서 징계대상이 된다.

또 당 회사의 상벌규정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만, 오히려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여 징계시효기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보통인의 정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반한다.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031-877-7522-3)

Q 경력은폐·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A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에 근무하던 소의 서진기업주식회사에서 근무성적 불량으로 해고당한 사실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명수배된 사실 등이 피고회사에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소의 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은폐하고 실재하지도 아니한 동인기업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사칭하였다는 것인 바, 회사가 사원을 고용할 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

더라면 사원의 정직성 등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여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가 위와 같이 그의 인격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요한 경력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됨.

Q 입사 시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은 나중에라도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A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

전·기·상·식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고객지원과장 **노상곤**



시다. △ 전기 다리미 다리질할 옷감은 가능한한 모아서 다림시다. 옷감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알맞게 맞춰 사용합시다. 손수건 등 얇은 옷감은 스위치를 켜 즉시 또는 끄고 남은 여열을 이용합시다.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를 피하여 사용합시다(여름철은 낮 시간대, 기타 계절은 저녁시간대).

△ 청소기 큰쓰레기는 미리 줍고, 필터는 자주 청소합시다. 호스와 청소기 본체로부터의 공기누설이 없도록 합시다. 청소면에 따라 속도를 변환하여 사용합시다.

△ 전기 보온 밥솥 전기밥솥에 표시된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시다. 취사시 따뜻한 물을 사용하면 취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뚜껑을 자주 여닫지 마십시오. 열관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합시다.

△ 냉장고 모든 식품은 적정온도의 위치에 보관할 때 제맛을 냅니다.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힌 다음 보관합시다. 냉장고 안의 음식물은 냉장고 용량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포천지점 고객지원과(031-539-0231)

가전 제품별 전기요금 절약방법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가전 제품별 절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에어컨 주택용 고객의 경우 누진요금체제로 인해 에어컨 사용시 고율의 전기요금단가가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냉방시 실내온도와 실외온도 차이는 5℃ 이내로 하여야 하며, 지나친 냉방은 여름감기, 두통 등의 냉방병으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에어컨은 강·중·약 사용강도에 따라 단계마다 30%씩의 절전효과가 있으며 강 대신 약으로 강도를 낮추고 선풍기를 함께 가동하면 종전 소비량의 6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선풍기에 비해 약 30배의 전력이 더 소모됩니다.

격이나 제조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은 모니터(90W) + 컴퓨터(300W) = 390(W)이며, 이는 백열전등의 6.5배에 해당됩니다. 컴퓨터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경우 컴퓨터 전원을 반드시 끄기 바라며, 또한 일정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작/설정/제어판/디스플레이/화면보호기에서 모니터 절전기능을 추가 시켜 사용합시다.

△ 선풍기 2~3시간 이상 계속 사용하면 피부 수분이 증발되어 건강에 해로하며 기기 자체에 무리를 주기 때 문에 20~30분 간격의 타이머를 사용합시다. 자연풍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끄도록 합시다. 강풍은 미풍에 비해 20W정도 전력소모가 많으므로 가능한한 미풍으로 사용합

의·학·상·식

포천병원 이비인후과장 **강진욱**



면장애를 겪는 수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수면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은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침실에서 낮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은 피하십시오. 만약 잠자리에 들지 15분 내지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잠자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침실을 나와서 TV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또는 따뜻한 우유나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신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피곤해지면 다시 침실로 가십시오. 만약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다시 침실을 나와 똑같이 반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너무 조용한 상태를 피하십시오.

☞문의전화 : 이비인후과 539-9248

이명증으로 잠이 안올때

이명증이란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귀 안에서 또는 머리 속에서 나는 것 같은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귀울림과 같은 말입니다. 마치 팔, 다리의 통증이나 두통과 같이 일종의 증상이지 질환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명증은 90%이

상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으로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명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사람에게 따라서 수면 장애나 위장관 장애 등의 심한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및 신경과 검진을 받으셔서 치료가 필요한 다른 질병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이명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이명 때문에 수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중증총회의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요구에 불응할 경우

Q 甲을 포함한 20여명의 종원들은 Z중증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Z중증의 총회소집을 중증대표자 丙에게 요청하였으나, 丙은 총회의 소집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이제는 수개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甲 등 종원들은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지요?

A 중증 대표자는 그 중증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중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중증에 중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중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중증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중증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 할 것이고, 중증대표자는 중증총회의 소집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중증대표자가 중증원들의 정당한 총회소집요

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관례를 보면, "중증원들이 중증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중증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 중증총회의 소집권자인 중증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중증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79 판결,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 등은 발기인으로서 Z중증의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 - 829 - 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폭력피해자 지원대책의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 학교폭력법 제정으로 2004.1.2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는 하나 실효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기본계획의 5개 영역의 법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예방교육 및 연수강화, 피해자 구제, 가해자 선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학교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승진이나 인사평가기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학교의 태도로 학교폭력 문제를 무조건 감추고 은폐, 축소하려는 경향이 드러나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이 실패할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성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공식적으로 가해자가 처벌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증여세 계산】

Q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주택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은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하는데 증여 공제 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증여세 과세금액은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물론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수증자의 소득으로 감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채무액 변제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수증자가 소득 발생처가 없어 변제능력이 없거나 증여자 등이 대신 감아주는 경우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등에게 재산 증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당해 증여 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금액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3월 내) 재단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하여줍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인 경우 : 3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이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입니다.

☞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안전한 전기사용 365일 행복보장



안 병 호 대표이사

전기특급 기술자 다수 확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신규신청 · 각종 대관업무 상담



◆변압기 절연유 실험



◆변압기 부하 점검